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11. 18.(수) 10:00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697명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명단 공개 사전 예고로 체납액 총 932억원 자진 납부 유도 성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8일(수) 0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해당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규 공개 대상자 13,697명... 수도권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으로, 전체 인원은 13,697명이며, 전년 대비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자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41명), 경기도(3,644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 6개월 소명 기회 부여 후 최종 확정... 사전 예고로 932억 원 자진 납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동시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월경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명단 공개에 대한 사전 예고는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각각 자진 납부해 명단 공개 전 총 93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 출국금지·감치 등 강력한 후속 행정제재 병행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관세청에 지방세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법무부에 출국금지(지방세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요청,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일정 기간 구금) 처분(지방세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代서은주 (044-205-3831)
		담당자	사무관	조익현 (044-205-3807)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우철 (044-205-3871)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5-38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명단공개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사례

※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각색한 사례

#1. 해외 페이퍼컴퍼니·차명 재산으로 숨긴 433억 원, 명단공개 실시 및 끈질긴 추적 끝에 공탁금 압류

□□시에 거주하는 A씨는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운용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지방소득세 등 11건, 총 433억 원을 체납했다.

A씨는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친인척과 사업체 명의로 빼돌려 놓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재산 압류에 난항을 겪던 지방정부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사전 예고하는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A씨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나아가 은닉 재산에 대한 집요한 추적 조사를 벌인 끝에, 2026년 10월 A씨의 공탁금을 전격 압류하여 약 7,500만 원을 징수하였다.

#2. 명단공개 예고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이행강제금 체납 9천만 원 전액 징수

△△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 9천만 원을 경제적 사유로 체납 중인 C씨를 상대로 재산 조회와 함께 압류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C씨가 체납처분 유예를 요청해 오자, △△시는 조세 채권 일실을 막기 위해 납세담보(근저당권 설정)를 먼저 확보한 뒤 분할 납부를 유도했다.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와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빈틈없이 병행 추진한 결과, 압박을 느낀 C씨로부터 체납액 9천만 원 전액을 완납받고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참고2 **'2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신규) 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6. 11. 18.(수) 00:00 기준

1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합계	인원	12,069	4,122	7,947	1,628	358	1,270
	체납액	777,936	330,513	447,423	163,070	63,073	99,997
1천만이상 3천만이하	인원	7,878	2,647	5,231	1,036	173	863
	체납액	140,823	46,665	94,158	17,258	2,969	14,289
3천만초과 5천만이하	인원	1,889	588	1,301	212	50	162
	체납액	72,803	22,855	49,948	8,147	1,925	6,222
5천만초과 1억이하	인원	1,307	443	864	183	52	131
	체납액	89,594	30,872	58,722	12,755	3,664	9,091
1억 초과 3억 이하	인원	757	310	447	139	52	87
	체납액	121,002	50,368	70,635	22,502	8,857	13,645
3억 초과 5억 이하	인원	109	63	46	27	12	15
	체납액	41,869	24,788	17,081	10,166	4,538	5,628
5억 초과 10억 이하	인원	75	44	31	13	8	5
	체납액	51,216	30,004	21,212	8,945	5,835	3,110
10억 초과	인원	54	27	27	18	11	7
	체납액	260,628	124,961	135,667	83,297	35,285	48,012

2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지방세	인원	7,947	667	1,488	2,400	2,206	880	306
	금액	447,423	29,269	118,103	106,347	94,139	84,398	15,167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인원	1,270	49	130	263	408	286	134
	금액	99,997	1,950	8,115	10,553	59,283	13,460	6,636

참고3 **'2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6. 11. 18.(수) 00:00 기준

1 지방세

< 신규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2,069**	**777,936**	**4,122**	**330,513**	**7,947**	**447,423**
서울	1,841	233,114	655	108,884	1,186	124,230
전남광주	820	35,682	384	19,477	436	16,205
부산	780	45,052	247	19,532	533	25,520
대구	339	62,420	130	52,047	209	10,373
인천	810	74,658	140	11,884	670	62,775
대전	339	13,147	105	5,428	234	7,719
울산	186	7,100	49	1,829	137	5,270
세종	75	3,428	41	2,057	34	1,371
경기	3,644	169,644	1,244	57,015	2,400	112,629
강원	315	14,741	101	4,674	214	10,067
충북	402	20,431	133	5,524	269	14,907
충남	594	23,112	218	10,378	376	12,734
전북	462	18,577	182	7,611	280	10,966
경북	679	26,979	233	12,535	446	14,443
경남	517	18,062	153	6,650	364	11,412
제주	266	11,790	107	4,988	159	6,802

< 신규 + 기존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63,921**	**4,151,589**	**18,106**	**1,620,433**	**45,815**	**2,531,155**
서울	14,489	1,658,070	4,204	741,174	10,285	916,896
전남광주	3,487	160,109	1,406	80,760	2,081	79,349
부산	3,330	167,806	852	62,954	2,478	104,852
대구	1,737	120,007	512	72,264	1,225	47,743
인천	3,704	198,130	486	32,362	3,218	165,768
대전	2,109	98,416	630	38,258	1,479	60,157
울산	1,027	44,893	292	14,632	735	30,262
세종	344	15,264	167	7,854	177	7,410
경기	15,630	925,379	4,146	279,248	11,484	646,132
강원	1,249	54,791	280	16,556	969	38,234
충북	2,219	95,890	731	35,727	1,488	60,163
충남	3,964	177,241	1,214	76,812	2,750	100,429
전북	2,340	91,420	828	36,091	1,512	55,329
경북	3,397	130,976	1,054	52,245	2,343	78,732
경남	3,776	158,023	952	51,780	2,824	106,243
제주	1,119	55,175	352	21,717	767	33,458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신규 >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628**	**163,070**	**358**	**63,073**	**1,270**	**99,997**
서울	287	19,527	46	9,173	241	10,354
전남광주	156	6,883	35	3,565	121	3,318
부산	80	8,658	22	1,738	58	6,920
대구	21	4,227	12	2,796	9	1,431
인천	72	41,875	13	606	59	41,269
대전	11	247	4	88	7	159
울산	7	126	2	28	5	98
세종	15	1,576	7	954	8	622
경기	385	53,664	111	35,406	274	18,258
강원	58	2,409	13	546	45	1,863
충북	25	566	4	120	21	446
충남	122	4,885	12	733	110	4,152
전북	86	2,348	15	352	71	1,996
경북	167	7,665	19	1,272	148	6,393
경남	85	5,244	12	3,647	73	1,597
제주	51	3,170	31	2,049	20	1,121

< 신규 + 기존>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5,731**	**523,436**	**1,123**	**226,747**	**4,608**	**296,689**
서울	1,024	82,810	121	21,019	903	61,791
전남광주	280	11,752	59	5,497	221	6,255
부산	452	35,348	75	13,023	377	22,325
대구	76	7,679	29	4,602	47	3,077
인천	295	55,821	38	3,887	257	51,934
대전	49	1,364	16	339	33	1,025
울산	61	3,463	15	1,211	46	2,252
세종	47	3,245	18	1,727	29	1,518
경기	1,606	234,910	394	145,595	1,212	89,315
강원	109	4,631	28	1,529	81	3,102
충북	127	5,886	33	2,975	94	2,911
충남	386	15,570	63	3,362	323	12,208
전북	226	7,404	42	2,532	184	4,872
경북	466	22,369	72	6,399	394	15,970
경남	406	23,803	65	9,306	341	14,497
제주	121	7,381	55	3,744	66	3,637